[양식 제29호]

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(년 월 일)

※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고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"○"으로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가족관 계등록 창설자	친 성 성		한글 (성)		/ (명)	н				성 특	望 し	1	남 20	1
						본 (한자)			주민]등록	번호		-	
			한자	(성)	/ (명)	(12.1)			출	생 연	월 일			
	등록	기준지												
	주 소													
	부 모	부(父)	성명	(성)	/ (명)	등록기준지								
						주민등록번호				-				
		모(母)	성명	(성)	/ (명)	등록기준지		지						
						주민등록번호						_		
②신분이	한 사항													
③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					년	월	일	법위	원명					
④기타														
⑤ 신고인		성 명	① 또는 서명					너명	주민	[등록	번호		_	
		자 격	[] 년	l-인	2배우	자 [3]직계	혈족	4	기타(자격 :)
		주 소						전	화			이메일		
⑥제출인	<u> </u>	성 명				주민등록번			ই			_		

작 성 방 법

- ※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①란: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는 원칙적으로 사건본인 각자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와 함께 가족 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 - :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②란:이 신고서에서 정한 이외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, 별지로 첨부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서(신분표)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.
- ④란: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- ⑥란: 제출자(신고인 여부 불문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
첨 부 서 류

- 1.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의 등본 1부(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할 경우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).
- 2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]
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- ※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